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06

발의연월일: 2020. 8. 12.

발 의 자: 박찬대·신동근·김홍걸

이동주・맹성규・강선우

김교흥 • 정일영 • 허종식

문정복 · 유동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2018년 대학의 연구개발비가 6조원을 돌파하고 논문 게재 실적이약 6만7천건에 달하는 등 연구개발 규모가 증가하면서 연구부정행위발생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연구부정행위을 법상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연구부정행위의 정확한 범위를 정하기 어렵고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음.

이에, 연구부정행위의 종류를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보다 상위법령인 학술진흥법에서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연구부정 행위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그에 대한 후속조치 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법 상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종류가 정해짐에 따라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업비 지급정지 및 사업비 환수를 하도록 하고, 참여제한 기간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같이 종전의 최대 5년에 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연구부정행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5조제1항).
- 나.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규정함(안 제19조제1항제3호 신설).
- 다. 최대 참여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20조제1항).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교육부장 관으로부터 사업비의 지원을 받은 대학등"을 "대학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대학등은 다음 각 호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 게 표시하는 행위
- 2. 그 밖에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9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제20조제1항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u><신</u>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u>① 올바</u>
<u>설></u>	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
	구자 및 대학등은 다음 각 호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u>된다.</u>
	1.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
	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그 밖에 연구활동의 건전성
	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
	<u> 령으로 정하는 행위</u>
① (생 략)	$\underline{2}$ (현행 제 1 항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연구	<u>③</u> <u>제2항</u>
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효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등	
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사업비	<u>④</u> <u>대학등</u>
의 지원을 받은 대학등은 연구	
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연구윤리지침의 작성, 제2항에 따른 정부의지원 및 제3항에 따른 대학등의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①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
 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
 고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2. (생 략) <u><신 설></u>

② ~ ④ (생 략)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① 교육부장관은 연구자나 대학등이 제1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

<u>⑤</u> 제2항	-
<u>제3항</u>	-
<u>제4항</u>	-
	-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
①	-
	-
	_
	-
	_
1. · 2. (현행과 같음)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	上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 정행위를 한 경우	부_
	上
정행위를 한 경우	
<u>정행위를 한 경우</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정행위를 한 경우② ~ ④ (현행과 같음)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	
정행위를 한 경우② ~ ④ (현행과 같음)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	
정행위를 한 경우② ~ ④ (현행과 같음)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	
정행위를 한 경우② ~ ④ (현행과 같음)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	
정행위를 한 경우② ~ ④ (현행과 같음)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	
정행위를 한 경우② ~ ④ (현행과 같음)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	
정행위를 한 경우② ~ ④ (현행과 같음)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	

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	
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